

2025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세제개편안



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



- 미래전략산업 지원
-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
- 지역성장 지원

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



- 서민·중산층, 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
- 소상공인·중소기업 및 상생협력 지원
-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

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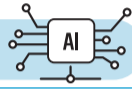


-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
- 과세체계 합리화
-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

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

1 미래전략산업 지원

1 AI·반도체 산업 지원



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제지원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세부기술) ① 생성형 AI 기술, ② 에이전트 AI 기술, ③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, ④ 저전력·고효율 AI 컴퓨팅 기술, ⑤ 인간 중심 AI 기술 ○ (사업화시설)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
AI 우수인력 등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% 감면 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
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반도체 제조용 장비, 항공기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·수리공장의 지정기간 연장 ○ (지정기간) 최대 3년→10년

2 K-문화·콘텐츠 산업 지원



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웹툰 등 제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소득세·법인세 10% (중소기업은 15%) 세액공제 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
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* * (현행) 10%(중소 15%, 대 5%) → (개정) 10%(중소 15%) 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
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 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

3 해운·방위산업 지원



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운송·이동수단 분야 세제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세부기술) ①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(선박/신설) ②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(자동차/신설) ③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(자동차/확대) ④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(자동차/확대) ○ (사업화시설) ①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·실증 시설(선박/신설) ②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(자동차/신설) 													
우주 선화주기업 세제지원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현행</th> <th>개정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기본 공제</td> <td>요건: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% 이상</td> <td>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금액: 국적선사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1% + 전년대비 증가비용의 3%</td> <td>국적선사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0.5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추가 공제</td> <td>요건: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% 이상</td> <td>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% 이상</td> </tr> <tr> <td>금액: <신설></td> <td>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해상운송비용의 1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 	구분	현행	개정안	기본 공제	요건: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% 이상	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% 이상	금액: 국적선사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1% + 전년대비 증가비용의 3%	국적선사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0.5%	추가 공제	요건: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% 이상	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% 이상	금액: <신설>	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해상운송비용의 1%
구분	현행	개정안												
기본 공제	요건: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% 이상	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% 이상												
	금액: 국적선사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1% + 전년대비 증가비용의 3%	국적선사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0.5%												
추가 공제	요건: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% 이상	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% 이상												
	금액: <신설>	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해상운송비용의 1%												
방위산업 세제지원 확대	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·안정화 기술 및 관련 시설을 신성장·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													

4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선



- (공제구조) 사후관리 방법을 고용 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방식에서 고용 유지 시 2~3년차에 더 높은 공제 방식으로 전환

구분		1인당 공제액(단위:만원)				구분		1인당 공제액(단위:만원)			
우대*	기본	중소(3년)		중견(3년)	대(2년)	우대*	기본	중소(3년)		중견(3년)	대(2년)
		수도권	지방					수도권	지방		
1년차	700	1,000	500	300	우대*	2년차	1,600	1,900	900	500	
2년차	1,700	2,000	900	-			기본	3년차	400	700	300
3년차	900	1,200	500	-							
1년차	1,000	1,300	500	-	기본	2년차	900	1,200	500	-	
2년차	1,000	1,300	500	-			3년차	1,000	1,300	500	-
3년차	1,000	1,300	500	-							

* 청년(15~34세)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 근로자 등

- (공제요건) 최소 고용증가 인원(중견기업 5명, 대기업 10명) 초과분만 공제
- (사후관리) 고용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*
* (현행) 고용 일부 감소시 고용이 감소한 해부터 공제 잔액 배제
- (추가공제)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* 적용기한 1년 연장(~'26.12.31.)
*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견기업 900만원, 중소기업 1,300만원
-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

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

1 자본시장 활성화



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지원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(14~45% 세율)대상에서 제외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요건 (① and ②)</th> <td>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배당성향 40% 이상 or 배당성향 25% 이상 + 직전 3년 대비 5% 이상 배당 증가</td> </tr> <tr> <th>대상</th> <td>현금배당액(중간·분기·결산배당)</td> </tr> <tr> <th>세율</th> <td>(2천만원 이하) 14%, (2천만원~3억원) 20%, (3억원초과) 35%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기한) '26~'28년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소득분 	요건 (① and ②)	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배당성향 40% 이상 or 배당성향 25% 이상 + 직전 3년 대비 5% 이상 배당 증가	대상	현금배당액(중간·분기·결산배당)	세율	(2천만원 이하) 14%, (2천만원~3억원) 20%, (3억원초과) 35%					
요건 (① and ②)	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배당성향 40% 이상 or 배당성향 25% 이상 + 직전 3년 대비 5% 이상 배당 증가											
대상	현금배당액(중간·분기·결산배당)											
세율	(2천만원 이하) 14%, (2천만원~3억원) 20%, (3억원초과) 35%											
투자·상생협력 촉진세제 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비율 상향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현행</th> <th>개정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환류대상</td> <td>투자, 임금증가, 상생협력 지출액</td> <td>(좌 등) + 배당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기업 소득 비율</td> <td>투자포함형</td> <td>60~80%*</td> </tr> <tr> <td>투자제외형</td> <td>10~20%**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시행령에서 70%로 규정 / ** 시행령에서 15%로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 	구분	현행	개정안	환류대상	투자, 임금증가, 상생협력 지출액	(좌 등) + 배당	기업 소득 비율	투자포함형	60~80%*	투자제외형	10~20%**
구분	현행	개정안										
환류대상	투자, 임금증가, 상생협력 지출액	(좌 등) + 배당										
기업 소득 비율	투자포함형	60~80%*										
	투자제외형	10~20%**										
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	국제결제은행의 국내 예금, 환매채(RP) 등 원화표시 자산 투자 시 이자·배당·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											

2 벤처투자 지원



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 시 법인세 추가 공제율 상향(기본: 5%, 추가: 3~5%) <pre> graph LR A[투자자 내국법인] -- 출자 --> B[민간 벤처모펀드] B -- 출자 --> C[벤처펀드1] B -- 출자 --> D[벤처펀드2] B -- 출자 --> E[벤처펀드3] C --> F[벤처기업 등] D --> F E --> F </pr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
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①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②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(SPC)를 통한 출자에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 적용 <pre> graph LR A[투자자 내국법인] -- 출자 --> B[벤처투자조합] B -- 100% 출자 --> C[SPC] C --> D[벤처기업 등] </pr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

3 지역성장 지원

고향사랑기부금 세제지원 확대	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				
	2,000만원 이하: 15%	2,000만원 이하: 15% 20만원 이하: 40% (좌동)			
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	○ (공제구조) 공장·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·기간 확대				
	구분	낙후지역 ¹⁾		그 외 지역	
		현행	개정안	현행	개정안
	수도권 인구감소 지역	5년 100% +2년 50%	5년 100% +3년 50%	〈감면 없음〉	
	수도권 연접지역 ²⁾	5년 100% +2년 50%	5년 100% +3년 50%	5년 100% +2년 50%	5년 100% +3년 50%
	지방광역시	7년 100% +3년 50%	7년 100% +4년 50%	5년 100% +2년 50%	5년 100% +3년 50%
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	○ (내용) 아시아문화중심지, 금융중심지 등 지방 경제산업 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				
	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				

1) 낙후지역: 인구감소지역, 성장축진지역, 고용·산업위기지역
2) 수도권 연접지역: 당진시, 아산시, 원주시, 음성군, 진천군, 천안시, 춘천시, 충주시, 홍천군(내면 제외), 횡성군
3) 중규모도시: 구미시, 김해시, 전주시, 제주시, 진주시, 창원시, 청주시, 포항시

○ (공제요건) 투자·고용 수준에 따른 감면한도* 설정
* 지방 투자누계액의 70%
+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,500만원(청년·서비스업 2,000만원)

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

○ (내용) 아시아문화중심지, 금융중심지 등 지방 경제산업 특구
입주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

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

3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

관세 중복조사 금지 대상 합리화	관세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 대상(기간 및 범위)을 중복조사금지 대상으로 규정
관세 조사 사전통지기간 합리화	관세조사 사전통지기간을 조정하고, 사전통지 예외 조사의 당일통지 및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통지 의무화
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	경제적 사정 등으로 심사·심판청구 등을 기한 내 제기하지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지원
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	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1년 유예 ('26.1.1. → '27.1.1.)

구분	현행	개정안
일반 조사	조사 15일 전	20일 전
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	조사 15일 전	7일 전
사전통지 예외	〈신 설〉	당일통지

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

1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

법인세율 환원	구분	세율(%)		
	과세표준(억원)	종전	현행	개정안
	~2	10	9	10
	2~200	20	19	20
	200~3,000	22	21	22
3,000~	25	24	25	
증권거래세율 환원	코스피*	0%	0.05%	
	코스닥	0.15%	0.20%	
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	(보유금액)	종목당 50억원	종목당 10억원	
	과세표준(조원)	0.5%	0.5%	
금융·보험업 교육세 개편	과표 1조원 이하	0.5%	0.5%	
	과표 1조원 초과	0.5%	1.0%	
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합리화	취득가액 초과분: 과세*	감액배당 전 양도차익	감액배당 후 양도차익	
	취득가액 내 감액배당: 비과세**	취득 가액	조정 취득 가액	

2 과세체계 합리화

한시적 지원 종료	임시투자세액공제,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적용기한 종료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	○ (내용)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
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	○ (내용)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 ('26년 5%, '27년 이후 9%) 적용
	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
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	덤핑물품을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,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·완성 시 덤핑 과세대상에 추가

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

지역사랑상품권 업추비 손금 확대	○ (내용)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동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, 추가한도 2배 상향(10→20%) 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
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기준금액 상향	○ (내용)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% (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%)를 세액공제 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
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	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 미제출 시 또는 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
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	2년 내 체납액을 50% 이상 납부한 경우, 감치 실익이 없거나 양도담보권자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등 감치 신청 제외

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

1 서민·중산층, 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

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 확대	○ (내용)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자녀당 50만원 상향 (최대 100만원)			
	- 단,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자녀당 25만원 상향(최대 50만원)			
초등 1~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신설	수업료 등 공납금,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, 급식비 및 교과서 대금	초등학교 1~2학년(만 9세 미만)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		
		(좌동)		
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	교육비의 15% 세액공제(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)			
	구분	현행	개정안	
대상	자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	자녀 소득요건 폐지		
월세 세액공제 확대	총급여 5,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17%, 5,500만원 초과~8,000만원 이하는 15% 세액공제			
	구분	현행	개정안	
	대상	세대주 (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)	부부 각각 공제 허용	
공동주택 관리구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	○ (내용) 읍·면지역, 전용면적 135㎡ 이하 공동주택 관리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		
	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			
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	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(4→3%) 및 퇴직소득을 장기 연금 수령 시 감면 강화(20년 초과 시 연금외수령의 50%)			
	○ (내용)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 ('26년 5%, '27년 이후 9%) 적용			
상호금융 예탁금· 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	구분		현행	개정안
	농협·수협· 산림조합	조합원		비과세
		준조합원	총급여 5천만원 이하	비과세
	신협· 새마을금고	조합원	총급여 5천만원 이하	비과세
회원		총급여 5천만원 초과	저율 분리과세	
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				

2 소상공인·중소기업 및 상생협력 지원

지역사랑상품권 업추비 손금 확대	○ (내용)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동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, 추가한도 2배 상향(10→20%) 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
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기준금액 상향	○ (내용)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% (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%)를 세액공제 ○ (적용기한) 3년 연장(~'28.12.31.)
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	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 미제출 시 또는 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
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	2년 내 체납액을 50% 이상 납부한 경우, 감치 실익이 없거나 양도담보권자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등 감치 신청 제외

